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443,922,157	13,317,665
일반회계		436,949,758	13,108,493
특별회계		6,972,399	209, 172
	기타특별회계	6,972,399	209,172
	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2,769,115	83,073
	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987,860	29,636
	주택사업특별회계	23,168	695
	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67,879	32,036
	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1,263,047	37,891
	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861,330	25,840

- 제 2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
- 제 4조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
-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626,560천원으로 한다.
- 제 6조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
-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
-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.